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25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엄태영 · 이만희 · 김상훈
안철수 · 권영진 · 윤한홍
이종배 · 김용태 · 김재섭
김선교 · 서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⑫ (생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	----------------